

(통권 22-2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2. 2. 18.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I. 경제	1. 2022년 국내외 경제전망	1
	2.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국을 중심으로 -	4
II. 재정	3.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및 탄소 가격에서의 시사점	7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11
III. 정책	5.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13
	6.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제도정착 방안	16
	7. 초광역협력사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안정적 재원 지원 방안	18
	8. 뉴노멀 시대의 부적정 지출 의 방지를 위한 재정관 리체계 구축	21
IV. 법률 제·개정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 를 새로 마련	25

1.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 세계경제는 각국의 방역체계 강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
 - 선진국의 양적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등 잠재적 위험요인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2021년 들어 경제성장률 회복세, 2021년 상반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 및 신흥국 실업률 상승
 - 한편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선진국일 수록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규모가 큼
 - 국가 간 코로나19 대응 격차에 따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추가 인플레이션 압력 작용,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정 심화 우려
- **(세계경제환경)** IMF는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이 전년(-3.1%) 대비 9.0%p 상승한 5.9%, 2022년에는 4.9%로 전망
 - 글로벌 신용위험지표가 안정세나 물가상승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장기채권금리는 등락을 보임
- **(선진국 신흥국 경제 현황)**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미국, 일본,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하락하였으나 2021년 들어 회복세

- 2021년 들어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독일의 실업률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2021년 들어 미국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일본, 독일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
- 2021년 들어 중국, 인도, 브라질의 실업률은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였으나 이후 고용 개선세가 전망됨
- 코로나19 대응과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 국가별 대응 격차와 백신 보급의 불평등에 따른 리스크

- 중하위소득국가, 저소득국가의 백신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각각 27.7%, 3.0%로 고소득국가 및 중상위 소득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
- 백신 보급의 불평등은 국가 간 경기 회복 속도의 격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변이 출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 야기 우려
- 선진국일수록 GDP 대비 추경 등 추가 재정지출과 유동성 제공(대출 및 보증)정책의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점검하고,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 리스크를 분석

○ 인플레이션 리스크

- 인플레이션률이 각 시점에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변동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변선형추세모형을 적용한 결과, 주요국 인플레이션률의 현 수준이 최근 5개년 평균보다 높지만 단기 추세에 비해 낮은 상태로 나타남

○ **신흥국 금융불안정 리스크**

-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신흥국내 유입되었던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부각될 우려
-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외채 상환 능력을 분석하여 금융불안정성을 점검
 - 금융안정성 취약 : 국가 터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금융안정성 다소 취약 국가 :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

○ **소득불평등 리스크**

- OECD 회원국의 1996~2019년 자료를 대상으로 유동성 증가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협의 유동성(M3)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과 추정값의 크기를 참조할 때 해당 관계의 경제적 함의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2020년 협의유동성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2.6~36.3%p로 편차가 커 국가마다 소득불평등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 상이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21. 12)

2.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국을 중심으로 -

- (인구구조 변화)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추정

- 핵심노동연령대(30~64세)인구비중이 경제 영향 가장 큼
- 총인구가 1% 증가하면 연평균 GDP 증가율이 약 0.18%p 상승
-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
 - 고령화(30~64세 인구비중이 1%p 하락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1%p 상승)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
- 시기별 추정결과
 - 시기별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가 2000년대 이후 감소함
 - 2000년 이전: 연평균 경제성장률 약 0.47~0.54%p하락
 - 200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약 0.19~0.25%p하락
-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 분해
 - 핵심노동 연령인구와 고령층 간 노동생산성 격차 감소가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감소의 주된 요인(2000년 이전 -0.36%p → 2000년 이후 -0.14%p)
 - 두 집단 간 노동참여율 격차는 소폭 축소(2000년 이전

-0.16%p → 2000년 이후 -0.12%p)

○ (OECD국의 대응사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은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생산성 제고, 노동참여율 제고 등의 방향으로 대응하여 왔음

○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 해외 인구 유입

- 2025년 이후 인구증가에 이민이 더 큰 영향
-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과 사회통합 비용 발생

○ 생산성 제고 :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효과 상쇄를 위한 자동화

-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의 하락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자동화를 추진
- 자동화 추진 과정에서 부문간, 지역간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 대처방안 마련해왔음
- 자동화의 진행 과정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는 비숙련, 비전문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균형성장 방안을 검토

○ 노동참여율 제고: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 정책추진

- OECD 주요국 법적 정년 연령 및 연장 계획
 - 한국 :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60세 정년 적용, 일본 : 65세 정년 의무, 70세 정년 노력 의무(권고),
 - 독일 : 기존 65세에서 2012~2029년 사이 67세 점진적 연장,
- OECD 국가들은 정년연장 등의 고령자의 노동참여율 제고 정책을 시행
 -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15.3%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들은 정년을 연장하는 추이

○ (결 론) OECD국에 대한 분석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완화 가능 시사**

- 우리보다 앞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OECD 주요국의 정책을 살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
- OECD 국가들의 생산연령인구 확충, 노동생산성 제고, 노동참여율 증대 등의 정책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
-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가 필요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21. 12)

3.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및 탄소 가격에서의 시사점

- IPCC에서 2018년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특별보고서(IPCC, 2018)를 발표한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C 이내로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
-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배출과 관련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준수하게 하는 **직접 규제와 시장의 원리를 활용한 정책으로 구분**
 -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는 시장 참여자들이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경쟁시장에서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비용최소화의 효율성을 탄소배출에서도 유도하는 정책이며,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탄소저감정책을 준비할 때 탄소가격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
- 우리나라도 탈탄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에 탄소 가격 시그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되면서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의 탄소세 운용)** 국가단위로 탄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과세하는 탄소세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21년 4월 기준, 27개국이며, 탄소세의 평균세율은 32.8 USD/tCO₂e로 계산되나 국가별 세율의 수준이 상당히 차이남
 -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높은 세율로 부과하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나 비(非)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산화탄소톤당 10 USD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 참여대상 부문은 탄소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에 대한 상쇄(offset) 정책도 병행**

- 탄소세를 운용하는 국가들 상당수가 국내 배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세를 활용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북·서유럽에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유럽 및 비(非)유럽 국가들은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산화탄소톤당 세율을 10 USD 미만으로 운용

- 한편, 국가별로 탄소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는 ETS 참여자들에 대한 감면,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감면, 수송 및 운송 부문에 대한 감면이 있음

- **(해외 운용 사례의 시사점)** 탄소세의 세율 수준과 관련한 특징은 동유럽 국가들이나 비유럽 국가들에서 탄소세 세율은 북·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는 EU를 중심으로 EU-ETS의 배출권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탄소세 세율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탄소세가 ETS보다 더 먼저 도입되었는지의 여부는 세율상 눈에 띄는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탄소세의 적용범위는 대부분의 탄소세 도입국가들은 이중 부담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탄소세를 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를 별도로 도입하여 추가적인 탄소가격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타세를 부과한다면 K-ETS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결론) 국제적으로 탄소가격의 반영수단은 탄소세뿐만 아니라 ETS의 가격도 포함되며 탄소세 이외의 일반 에너지세도 포함

- 탄소세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ETS 참여자에 대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을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탄소세를 국내에 도입하더라도 탄소세의 대상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수송 부문은 이미 기존 에너지세제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탄소가격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탄소세 과세대상은 건물 부문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 정도가 후보가 될 수 있으며,
- 혹은 K-ETS에서 무상할당 대상 업종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탄소가격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국의 경제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율은 결정될 것임.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정유, 철강, 시멘트 산업과 같이 탄소다배출산업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음
- 우리나라는 이미 ETS를 통해 GDP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탄소세의 세

율은 제한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탄소세를 도입 한다고 하면, 기존 에너지세를 완전히 탄소세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기존 에너지세 세율의 일부를 탄소세로 대체하여 세금 총액은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기존 에너지세를 에너지 소비세와 탄소세로 단순화시키고 통합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1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 분야 내의 자원배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문제 조망**
 -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 필요
 -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축소 사회의 합리적 자원배분에 부적합
 -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재원조달의 책무성이 결여된 불완전성
 - 일본의 중앙정부 부담은 교원인건비의 1/3과 약간의 시설정비 비용에 한정
 - 미국의 경우 교육행정 자율성의 대가로 재원조달의 책무성 요구
 - 교육재정을 비롯하여 국가재정 전체적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60년 1인당 교부금액은 2020년의 5.5배로 급증하며, 소득과 물가 상승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현행 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고등교육정책은 1인당 소득 대비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하위권, 초중등 교육 투자는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기형적 자원배분의 결과
 -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 중 교육문제를 1순위로 뽑은 응답률은 2009년 11.8%에서 2018년 7.5%로 축소되어, 교육분야

투자의 중요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

-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래자원 마련을 위해서 재정적자나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교육지자체와 교육계는 추가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식해야 함
- 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은 국가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확대
- 교부금 산정방식은 교육수요자의 절대적 규모, 즉 **학령인구 수가 더욱 감소하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도록 전면 개편되어야 함
-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안은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을 1인당 경상GDP의 27% 수준으로 지원하는 매우 안정적인 방안으로 평가
- 일반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 교육성과 제고 및 일반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자체의 교부금 배분기준에 성과평가에 기초한 인센티브 제도
-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부세와 교부금의 통합을 추진
- 보다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지자체에 과세권한을 부여하고, 자원조달의 책무성 강화 필요

출처 : KDI(2021.12)

5.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 농업환경자원과 농업환경관리정책

- 농업환경자원은 대기, 강우, 토양처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연 요소는 물론 농촌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자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업 생산활동의 저변을 이루는 동시에 그러한 생산활동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음
- 농업환경관리정책: 농업환경자원을 개선, 관리, 보전하는 정책으로 정부나 농업 관련 기관이 농업 예산을 활용하여 환경재 생산을 촉진하거나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

○ 농업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 농업 생산활동 관련 환경문제 해결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토양의 양분수지 악화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농경지 확대에 의한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 과잉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영농폐기물로 인한 경관 훼손,

○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Net Zero 2050’ 추진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친환경성 확대 등 농업정책의 전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업환경관리정책 도입이 시급

- 농업환경자원의 유지·개선을 위한 농가 및 지역 단위 활동 장려와 관련된 국가 인프라 구축 등 필요.

○ 국제동향과 시사점

- 혜택: 미국 - 마케팅론, 직접지불제, 작물재해보험 등, EU - 직접지불금, 녹색지불, 일본 - 일본형 직접지불금, 다면적 기능

지불(농지유지, 자원향상), 환경보전형농업직불 등

- 의무: 미국 - 환경적 의무 준수, 토양 침식 방지, 습지 보호, 자연초지 보전 등, EU - 교차준수의무, 농지를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유지, 일본 - 농업·농촌 친환경 관리
- 시사점
 - 첫째, 관련 예산의 집행에 상응하는 농가의 준수의무가 단계별로 설정된 특징이 있음
 - 둘째, 대기질 관리, 농업용수 관리,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중립 노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이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중장기적 관점 법적·제도적 틀 내에서 함께 추진됨
 - 셋째, 정부나 지자체가 단순히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 현장에 밀착하여 활동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함

○ 우리나라 농업환경관리정책 한계

- 농업환경정책이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는 국제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농업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부하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관련 제도 또한 단편적·분산적으로 추진
- 농업의 생산성 향상 중심 정책 추진으로 농업환경정책 부재
-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미비
- 농업환경개선 및 보전사업 추진 미흡
- 농촌지역 및 농업 종사 인구 구조의 특성 반영 인프라 부족 등

○ 농업환경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입법 측면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환경보전과 관련한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에 대한 근거 마련
 - 농업·농촌환경보전 정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 제정
 - 각 분야별·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농촌환경보전정책의 법적 근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
- 정책 측면
 - ‘Net Zero 2050’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정책의 대전환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분야 환경관리정책과 환경부의 농촌지역 환경정책을 통합하여 기간 내 달성가능한 중장기 목표 설정, 예산, 사업, 조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 사업 운영 측면: 농업·농촌정책 방향 전환. 전담 조직 및 통합농업환경정책 마련
- 정보관리 측면: 한국형 농업환경지표 개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로드맵 작성, 농업환경변동조사 고도화, 환경자원정보의 관리 체계화 및 정책적 활용 구체화 방안 마련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2.1)

6.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제도정착 방안

○ 상품권 부정유통의 원인

- 할인율에 따른 부정유통 유인

- 할인율 수준별 소비자들의 상품권 구매의향은 거래제약에 수반되는 불편을 얼마만큼의 보상이 주어져야 현금과 동일하거나 거래의 수단으로 인식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음
- 사용자의 상품권 구매의향 조사결과는 상품권 판매를 위해서는 5% 이상의 할인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의 필요성

- 많은 긍정적 효과가 검증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부정적 인식 확산우려
-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사용자 및 가맹점 홍보 및 유인을 통한 부정유통 적발 건수를 최대한 감소 필요

- 발행 유형별 부정유통 행태

■ 발행 유형별 주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방식 ■

유형	위반 형태
 지류형	· 가족·지인(소규모), 알바생 등을 동원(대규모)하여 대리(할인)구매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상품·용역의 제공 없이 결제·환전하는 사례가 발생
 카드형	· 특별히 상품권 형태에 의해 발생하는 위반형태는 찾기 어려움 · 미가맹점이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를 대여하는 형태로 발생
 모바일형	· 상품권을 대리(할인)구매토록 하고 QR코드를 불법 복사 및 전송하여 상품권 구매자에게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결제·환전하는 사례 발생

※ 출처 : 행정안전부(21.12.15.)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 부정유통 방지 방안

- 1인당 구매금액 제한
 - 이 경우, 속칭, ‘현금깡’을 통한 금전적 이득이 감소 예상, 부정유통 시도는 감소 예상, 부정유통 적발시 가맹점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 사용자의 경우에도 부정유통 시도 시 상품권 구매기간을 제한 필요
- 부정유통 적발사례의 지자체 공유
 - 명의도용, 사용제한 업종의 사용, 비가맹점 업소에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하여 결제 등
-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 강화
 - 상품권 제도가 가지는 지역공동체 강화, 경제활성화 효과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각자의 부정유통 사례가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확산에 부정적 인식을 더하게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부정적 유통에 참여 방지 필요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12)

7. 초광역협력사업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안정적 자원 지원 방안

○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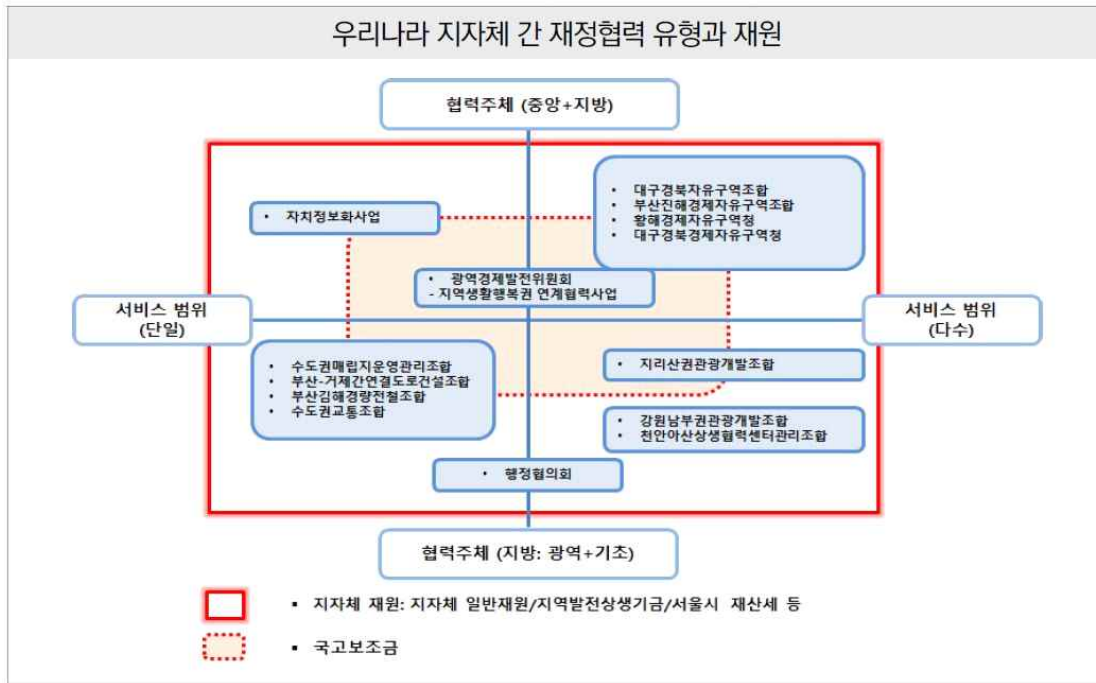
- 수도권 중심(전국 면적 대비 11.8% 면적)의 인구 및 자본이 집중되어 부동산, 낮은 출산율, 교통혼잡비용 증가 등의 과밀의 행정 비용 증가
-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비수도권 행정구역 인구감소에 따른 **현행 자치단체의 분절화된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문제 해결방식**의 협력 필요
- 주요 선진국의 광역대도시권 형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확대 추진(미국의 10개 초광역권 구축 전략, 영국의 City-Regions 정책에 따라 8개 도시권 형성 등)

○ 국내사례

- (문재인 정부) 자치단체별로, 동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전북권 등 광역차원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행정통합 추진

○ 자치단체 간 협력유형 및 자원 형태

- 우리나라는 ① 중앙-지방 간 사업단위 국고보조금 중심의 매칭 자원, ② 지자체-지자체 간 분담금 활용, ③ 지자체-지자체 간 지역발전상생기금 및 서울시 재산공동세를 활용한 제한적 협력적 재정지원의 특성



○ 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재정협력 현황

표 2 | 지자체 간 협력촉진을 위한 재정적 수단

	지원수단	개선 내용	기준
중앙 자원	국고보조금	- 기준보조율 인상	사업단위
	균특회계	-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단위의 기금(single pool) 마련	
	특별교부세 지원	- 현행 '시책수요'에 협력사업 산정항목 신설	사업단위
지방 자원	지역발전상생기금	- '협력특별회계'로 운영	협력체계 단위
	공동세(tax-sharing) 제도	- 광역도시권의 재산세 일정분 또는 증가분의 일정을 공동세	협력체계 단위 - 광역도시권 조합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균특법과 보조금법(이상 국가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협력 자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한계

-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위원회 특성상 집행력 부족, ②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재원의 부족 및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 한계, ③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행·재정적 근거 및 지원의 부족
- 재정분권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면서, 중앙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안을 마련하고 있어 정책 방향성의 충돌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1)

8. 뉴노멀 시대의 부적정 지출의 방지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구축

- (연구배경) 코로나 19 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급속히 증가된 정부지출규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더라도 **급증된 재정지출규모가 조속히 축소되지 않을 가능성, 비효율적 지출, 예산낭비 우려**
- 역사적으로 정부지출규모의 총량은 항상 변화했지만, 뉴노멀시대의 특징인 **세수감소와 지출수요증가를 고려할 때 당분간 정부지출규모의 증가가 예상**
 - 각국은 과도한 구조적 재정적자를 경험, 지출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 못함, 정부지출의 비효율성 및 비효과성 대책
- 부적정 정부지출의 개념정의를 위하여 니스카넨(Niskanen, 1971)의 예산 극대화 모형을 활용
 - 관료는 실제로 필요하거나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화의 크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예산극대화를 추구
 - 따라서 부적정 정부지출은 정부의 적정 지출규모를 초과하는 모든 정부지출로 정의
- **적정 정부지출의 기준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시**
 - 특히 정부지출은 강제성에 의한 조세 및 재정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조세 및 재정활동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합법성이 중요
 - 합법성은 법령의 저촉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의 당위성,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
- 부적정 정부지출의 유형을 위법한 지출, 비효율적 지출, 비효과

적 지출로 분류

- 국회 결산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된 **부적정 지출유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
 - 부적정 지출이라고 지적된 총 868회 중에서 비효율적 지출유형은 344회(약 40%), 비효과적 지출유형은 275회(약 30%), 위법한 지출유형은 249회(약 30%)
 - 특정 부적정 지출유형이 과다 또는 과소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적정 지출유형이 현실을 잘 반영
- 부적정 지출의 8가지 세부 유형 중, **법규위반 지출, 집행미흡, 목표달성 미흡이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세부 유형
 - 이 3가지 세부 유형의 공통점은 다른 세부 유형과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있음
 - 즉, 사업평가자 입장에서 이 3가지 세부 유형은 기계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부적정 지출유형
- 예산규모별 분석을 통하여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적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이것은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처가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 사업을 지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음
- 국회상임위원회별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적정 지출유형이 다양하게 분포
 - 사업성과를 단기적이고 계량적으로 측정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업평가자는 주로 비효율성 또는 비효과성에 대해 지적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사업성과를 단기적이고 계량적으로 측정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업평가자는 주로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는 경향을 보임

○ **(사례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최근 5년간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의 주요 재정사업 감사결과에서 부처 및 분야별 고려를 통해 10개의 재정사업을 선정

-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 실태’,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사업’, 국방부의 ‘군수조달관리’,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운영 및 관리’, 산업통장자원부의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 식품관리사업’환경부의 ‘환경 신기술인증’

○ 사례분석을 통해 부적정 지출의 **발생원인**으로 6가지의 요인

- 정치적 요인, 설계적 요인, 구조적 요인, 관리적 요인, 행태적 요인, 환경맥락적 요인
- 정치적 요인은 무리한 공약이행과 포크배럴, 로그롤링 등
- 설계적 요인은 정치적 요인과 대비되는 합리성 관점의 사업설계의 실패
- 구조적 요인은 사업수행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추진체계에 관련된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경우 등 사업구조의 복잡
- 관리적 요인은 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의 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

- 행태적 요인은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정책의 집행자와 수혜자가 예산에 대해 보이는 행태적인 측면의 요인임
- 환경맥락적 요인은 정책을 둘러싼 예측하지 못한 환경변화

○ **부적정 지출유형별 개선 방향**

- 재정사업의 편성 시 법률에 근거한 예산편성 필요
- 법규를 위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통제기제 필요
- 과다지출/편성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접근과 행태적 접근을 함께 적용할 필요
- 중복지출/편성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사업 활성화와 유사중복사업 검토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 집행률이 미흡하여 재정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시간 집행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
- 목표설정이나 수단선택의 오류로 인한 비효과적 지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2022.1)

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채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하며,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한편,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 효과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71조제2항, 안제 61조제3항 신설)
-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

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함(안 제80조제2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함
(안 제103조의2 신설)
-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
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06조)**

출처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2022.1.10.)